



## 집주인이 90 일 통지를 보냈습니다

- ❖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읽어보시오. 다른 주의 경우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❖ 강제 퇴거에 관한 법률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법률에 관한 최신 변경 사항은 [WashingtonLawHelp.org/resource/eviction](http://WashingtonLawHelp.org/resource/eviction)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- ❖ 여기 WashingtonLawHelp.org 에서 링크된 모든 팩트 시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.

### 워싱턴주에 살고 있다면 이 통지서를 읽어야 합니까?

예, 거주하시는 곳이 임대 주택이고 **90 일 임대 종료 통지서(Notice to Terminate)**(또는 90 일 퇴거 통지서)를 받으셨다면 읽어보셔야 합니다.

아니요, 거주하시는 이동식 주택이 본인 소유이고 부지를 임대하셨다면 이 통지서를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. [집주인이 조립식 주택/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나가도록 위협했습니다](#)를 읽어보시고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. 연락처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.

###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?

- ✓ 이 통지서는 무엇인지
- ✓ 집주인으로부터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
- ✓ 어디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

## 90 일 통지가 무엇입니까?

집주인이 보낸 경고장입니다. 집주인이 90 일 통지를 보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:

- 집주인이 그 장소로 이사를 오고자 하는 경우(또는 직계 가족이 이사를 오고자 하는 경우). 집주인이 이 유형의 통지서를 보내고 임대를 종료하였으나 실제로 임대 장소에 이사를 오지 않을 경우, 부당 퇴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-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집주인이 이 유형의 통지서를 보내고 임대를 종료하였으나 실제로 단독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, 부당 퇴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(아파트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)

## 이 종료 통지서를 특정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까?

예. 집주인(또는 그 직원이나 다른 성인)이 귀하에게 집에서 통지서를 “직접 전달”할 수 있습니다. 집주인은 또한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다른 성인이나 십대 후반인 개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. 집주인은 또한 통지서를 귀하의 집 문에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으나, 이 경우에는 사본을 귀하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

---

❖ 통지서를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.

---

## 집주인이 이 통지서만 보내면 나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?

아니요. 워싱턴주 법률은 집주인이 올바른 법원 퇴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도록 합니다. 집주인은 퇴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귀하에게 올바른 서면 “종료”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. 90 일 통지서는 이러한 유형의 통지서 중 하나입니다.

귀하께서 90 일이 지난 후에도 해당 장소에 거주하신다면 집주인은 퇴거 소송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.

집주인은 귀하에게 법원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. 법원 심리에서 판사가 보안관에게 귀하를 퇴거시키도록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해야 합니다. 보안관만이 귀하를 공식으로 퇴거시키거나 임대 주택의 자물쇠를 바꿀 수 있습니다.

**90 일 통지를 받았습니다. 집주인이 집을 판매한다고 적었습니다. 하지만 이 집을 다시 임대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! 집주인은 제가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것입니다.**

귀하는 퇴거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. 법원에서 귀하의 주장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. 즉,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 또한 이 증언에 대해 알고 있는 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변호사가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. 아래의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.

- 
- ❖ [법원 심리 또는 공판 준비하기](#)를 읽고 법원에서 퇴거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.
- 

**위와 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통지서를 받은 후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.**

귀하께서 이사를 하신 후 30 일 이내에 집주인이 적정 가격으로 해당 주택 판매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지 않았다면 불법 퇴거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. 아래의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.

귀하께서 이사를 하신 후 90 일 이내 또는 해당 주택의 판매 게시를 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, 둘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소유자가 주택 판매를 철회하거나 다시

주택을 임대한 경우, 집주인이 주택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한 경우에도 불법 퇴거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**90 일 통지를 받았습니다. 통지서에는 집주인이 임대한 주택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. 저는 2 주 후에 이사를 했습니다. 몇 달이 지나고 그 집에 최근 다시 가봤습니다. 집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.**

귀하께서 이사를 하신 후 90 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60 일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, 귀하는 불법 퇴거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.

## 법적 도움 받기

- 퇴거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나요? 1-855-657-8387 번으로 연락하세요.
- [CLEAR\\*Online](https://nwjustice.org/apply-online) - [nwjustice.org/apply-online](https://nwjustice.org/apply-online) 에서 온라인 신청을하실 수 있습니다
- 압류 상황이신가요? 1-800-606-4819 번으로 연락하세요.
- King 카운티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까(퇴거나 압류 제외)? 평일 오전 8 시에서 오후 6 시 사이에 2-1-1 (또는 무료 전화 1-877-211-9274)로 전화해주십시오. 담당자가 법적 조언 제공자에게 연결해드릴 것입니다.
- King 카운티 외부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까(퇴거나 압류 제외)? 평일 오전 9:15 에서 오후 12:15 사이 CLEAR 핫라인 1-888-201-1014 로 전화하시거나 [nwjustice.org/apply-online](https://nwjustice.org/apply-online)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.
- King 카운티 외부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고령자(60 세 이상)는 CLEAR\*Sr, 1-888-387-7111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www.WashingtonLawHelp.org

6356KO My landlord gave me a 90 Day Notice

(Korean) | 2021 년 8 월

- 청각 장애, 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 원하는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여 위 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.

CLEAR 및 2-1-1 에서는 통역을 제공해드립니다.

---

이 간행물은 귀하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. 이는 특정 법률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.

© 2021 Northwest Justice Project — 1-888-201-1014.

(복사 및 배포 허가는 Alliance for Equal Justice 및 비상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개인에게 제공되었습니다.)